

## 5. 유도 및 안내



### ■ 설치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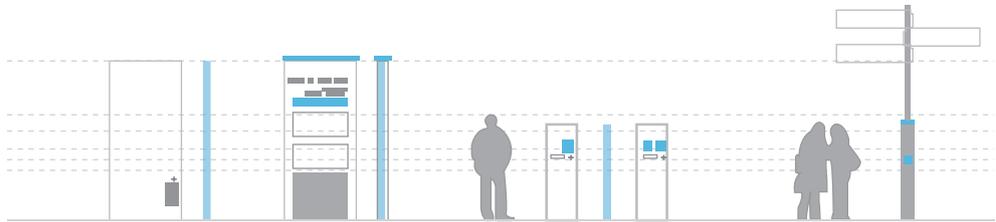
안내표시는 방문객을 목적지에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.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동으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이 정확해야 하며, 목적하는 방향과 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, 안내할 필요가 있다.

### ■ 설치요점

- 종합안내장치는 모두가 이용 가능해야 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는 물론, 청각, 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문자,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, 음성안내 등이 효과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.
- 위치, 높이, 글씨크기, 색상 등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고 중요한 정보는 청각장애인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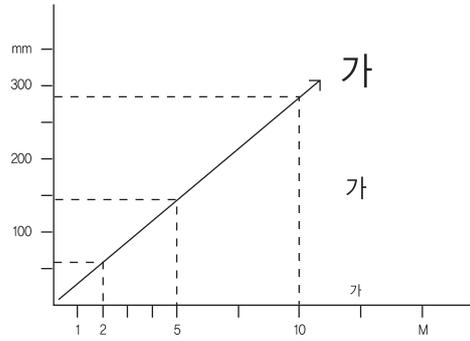
1) 설치기준

- 안내시설은 외부시설물 간(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, 놀이터 등)의 통합적인 안내 및 기타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안내판 정보판(지도 등)은 지상에서 0.9m~1.6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.
- 지상에서 0.6m~1.2m 이내에 비상호출장치(SOS벨)등을 설치할 수 있다.
- 야간에도 안내판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명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- 시각장애인, 청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음성안내,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.
- 단지내 종합 안내판은 단지의 주출입구에 설치하며,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의하도록 하부공간(높이 0.65m~0.7m, 깊이 0.45m 이내)을 확보해주어야 한다.
-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 안내판은 점자 안내표시 또는 촉지도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.0m 내지 1.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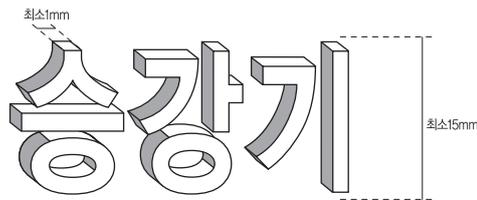


2) 표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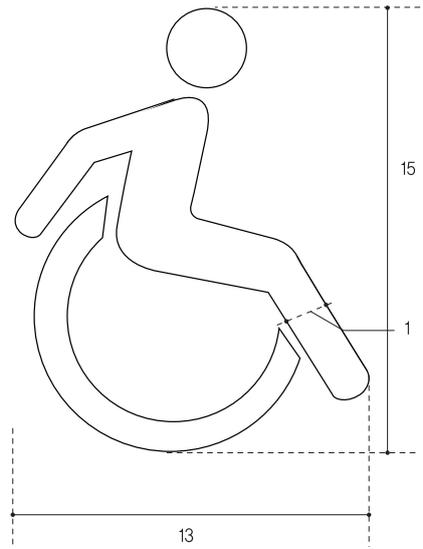
-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.
-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음성안내, 점자안내, 촉지도 안내 등이 있다.
- 청각장애인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전광게시판, 문자정보 모니터, 레이저스크린 등이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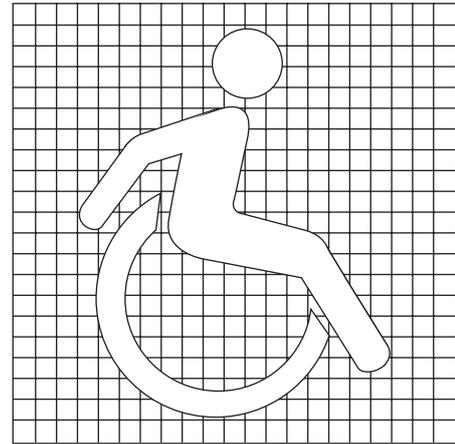
〈글자의 크기〉



〈안내표시 글자크기 기준〉



〈장애 유형별 작도방법〉



시각장애인



청각장애인

〈장애 유형별 안내표시〉



〈장애인 안내표시 응용사례〉

## 3) 점자블록

-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환기용으로 적합하다.
-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그러나 무조건적인 점자블록의 설치보다는 바닥재질, 색상, 질감차이 등으로 점자블록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바닥재의 색상과 질감의 차이, 손잡이의 이용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치하되, 동일한 건물 내에서는 통일되게 설치한다.
- 유도는 흰지팡이 또는 주변색과의 차이 등으로, 경고 또는 주위환기는 발로 밟을 때 질감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는 특성과 동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점자블록은 0.3m×0.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하며 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 $0.6\pm 0.1\text{cm}$ , 선형블록의 돌출선의 높이는  $0.5\pm 0.1\text{cm}$ 로 하여야 한다.

